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8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박수현 · 민형배
양문석 · 이기현 · 이성운
김문수 · 임오경 · 박지원
장종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,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,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(안 제12조의3

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).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취소할”을 “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지정취소”을 “지정취소·업무정지”로 한다.

③ 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의존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2.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
3.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

3.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

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의3(전담여행사 지정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의3(전담여행사 지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1.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의존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</u> <u>2.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</u> <u>3.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</u> 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</u> -----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<u>취소할</u>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	

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<신설> 3. 4. (생략) <신설>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·갱신·<u>지정취소</u>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	-. ----- -----. 1. 2. (생략) 3.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<u>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</u> 4.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. ⑥ ----- -----<u>지정취소·업무정지</u>----- ----- -----.
--	---